



입 학 원 서

(산업체위탁교육 전형)

| |
|------|
| 접수확인 |
| |

1. 지원자 인적사항 및 지원학과 수험번호 : (인터넷 접수후 접수번호 기록)

| | | | | |
|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성 명 | 한 글 | | 주민번호 | - |
| 출신고교 | 년 월 일 | 고등학교 | 과(계열) 졸업(예정) | |
| 검정고시 | 년 월 일 | 지구 합격 | | |
| 현주소 (현거주지) | 우편번호 | 주소: | | |
| | - | | | |
| 연락처 | 직 장 | 자 택 | 핸드폰 | |
| |) - |) - | - - | |
| | e-mail | | | |
| 위탁희망학과 | 제1지망 | 과 | 제2지망 | 과 |
| ※ 학과별로 15명미만 등록 시 학과개설이 안될 수도 있음(입학전 타과로 전환 가능) | | | | |

2. 재직 및 경력사항

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|
| 현 직 장 | 업 체 명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
| | 업 종 | | 직원수 | |
| | 직위(직급) | | 근무부서 | |
| | 업체주소 (현 근무지) | (-) | | |
| | 근무기간 | | | |
| 경력사항 | 근무(경력)기간 | | 회사명 | |
| | 년 월 일 ~ | 년 월 일 | | |
| | 년 월 일 ~ | 년 월 일 | | |
| 추천교직원 | 소 속 | | 성 명 | |

위 본인은 귀 대학(산업체위탁교육 전형)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.

년 월 일

지원자 : (인)

첨부서류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2부 | 5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|
| 2. 공적증명서(4대 보험 중 택1) 1부 | 6. 협약고교 추천서(해당자만) 1부 |
| 3. 재직증명서 1부 | 7. 교육센터 졸업증명서(해당자만) 1부 |
| 4.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1부 | 8. 학교생활기록부(해당자만) 1부 |

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

산업체 위탁교육계약서

<회사명>

경기과학기술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와 _____(이하 “산업체”라 한다)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 2 조 (위탁교육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)

- 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으로 한다.
- ② 위탁의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.

| 학 과 명 | 위탁생수 | 성명 | 위탁교육장 |
|-------|------|----|-------|
| 과 | 명 | | 본교 |
| 과 | 명 | | 본교 |

제 3 조 (위탁생의 자격)

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로 한다.

제 4 조 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

- ① 위탁의 대상자는 재직 산업체에서 추천한다.
- ② 본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-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.

제 5 조 (교육과정의 편성)

-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- 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제 6 조 (학사관리-제적기준)

- ①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하되, 위탁교육생이 이직한 경우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적처리 아니함
- ②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타 산업체 이직 시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
- ③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,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
- ④ 채용을 전제로 고교, 대학, 산업체 3자간 협약으로 입학한 대상자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

제 7 조 (산업체 교수요원 활용 및 시설이용)

위탁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산업체의 시설사용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이 약정을 별표로 첨부한다.

제 8 조 (교육비 및 등록)

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본 대학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, 산업체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 9 조 (위탁생의 신분)

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의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 10 조 (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)

대학에 대한 지원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표로 작성하여 명시토록 한다.

제 11 조 (위탁교육협력위원회)

대학과 산업체는 약정에 의거 위탁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 12 조 (기타사항)

기타 모든 사항은 대학의 학칙과 통상관계에 준한다.

년 월 일

대 학

산 업 체

주 소 :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

주 소 :

기관명 : 경기과학기술대학교

기관명 :

대 표 : 총장 김 덕 현 (직인)

대 표 :

(직인)

산업체 위탁교육계약서

<회사명>

경기과학기술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와 _____(이하 “산업체”라 한다)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 2 조 (위탁교육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)

- 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으로 한다.
- ② 위탁의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.

| 학 과 명 | 위탁생수 | 성명 | 위탁교육장 |
|-------|------|----|-------|
| 과 | 명 | | 본교 |
| 과 | 명 | | 본교 |

제 3 조 (위탁생의 자격)

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로 한다.

제 4 조 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

- ① 위탁의 대상자는 재직 산업체에서 추천한다.
- ② 본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-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.

제 5 조 (교육과정의 편성)

-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- 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제 6 조 (학사관리-제적기준)

- ①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하되, 위탁교육생이 이직한 경우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적처리 아니함
- ②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타 산업체 이직 시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
- ③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,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
- ④ 채용을 전제로 고교, 대학, 산업체 3자간 협약으로 입학한 대상자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

제 7 조 (산업체 교수요원 활용 및 시설이용)

위탁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산업체의 시설사용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이 약정을 별표로 첨부한다.

제 8 조 (교육비 및 등록)

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본 대학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, 산업체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 9 조 (위탁생의 신분)

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의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 10 조 (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)

대학에 대한 지원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표로 작성하여 명시토록 한다.

제 11 조 (위탁교육협력위원회)

대학과 산업체는 약정에 의거 위탁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 12 조 (기타사항)

기타 모든 사항은 대학의 학칙과 통상관계에 준한다.

년 월 일

대 학

산 업 체

주 소 :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

주 소 :

기관명 : 경기과학기술대학교

기관명 :

대 표 : 총장 김 덕 현 (직인)

대 표 :

(직인)

